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은행 및 증권사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는 약관,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됩니다.

구 분	내 용						
가 입 대 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가 입 금 액	▷ 최저 : 1원 이상 ▷ 최대 : DB형 - 제한없음, DC형 및 IRP형 - 1억원까지						
계 약 기 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1년, 2년, 3년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적 용 이 율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2025.9월 기준, 세전, 연)						
	구 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DB형	연이율	3.00%	3.00%	3.10%	2.80%	2.60%
		연수익율	3.00%	3.01%	3.14%	2.87%	2.70%
	DC/IRP형	연이율	2.50%	2.50%	2.60%	2.40%	2.40%
		연수익율	2.50%	2.51%	2.63%	2.45%	2.48%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자동 재예치 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이자계산 방법	구 분		이자 계산식 (월단위)				
	복리식		$\text{원금} \times \{ (1 + \frac{\text{이율}}{12})^n - 1 \}$ (n은 경과월수)				
만기시 처리방법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중도해지 이율	신규일부터 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을 적용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금리(0.2%)	
	1개월이상~12개월미만		약정금리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x 60%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x50%]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약정금리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x 70%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x50%]	
	24개월이상		약정금리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x 80%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x50%]	
	※ 중도해지이율이 소수점 세번째 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세번째 자리부터 버림			
	단, 최저금리는 약정금리 x 50% [계약일] 1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미만			
	※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 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당시 계약기간별 이율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가입당시 약정이율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 의 경우				
• 이율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6개월 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가입당시 6개월제약정이율	가입당시 1년제약정이율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재 예 치	• 만기 도래 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됩니다. (단, 만기일이 저축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하되, 재예치 신규일은 직전 만기일로 합니다.)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 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 할 해 지	• 자동 재예치 금액 : 원금에 약정이자를 더한 금액			
	• 만기 해지 포함 총 3회 이내 가능하며, 자동 재 예치된 경우도 재 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 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	
예금자 보호여부	DC/IRP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DB 비해당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3. 유의사항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899-11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savings.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 본 설명서에서 정의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정기예금 업무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금 용 용 어	내 용
압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질권설정	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